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5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 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2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김상훈의원안, 박수영의원안)	20

I. 개요

1.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5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7. 9.

(3) 회 부 일 : 2025. 7.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1항) ○ 세액공제 대상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에 출연 ③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④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신 설>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공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송언석의원안)</u>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윤준병의원안은 ②의 경우 50%) ○ 적용기한: <u>2028. 12. 31.</u>(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u>2035. 12. 31.</u>(박수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협력중소기업 자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2항) ○ 요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공제율: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 요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 ○ 공제율: 투자금액의 1%(대), 3%(중견), 7%(중소)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시 세액공제(제8조의3제4항)	○ 시행일: 공포한 날(송언석의원안) 2025. 1. 1.(윤준병의원안) 2026. 1. 1.(이인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송언석의원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요건: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중고자산 무상 기증 ○ 공제율: 해당자산 시가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84), 이인선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60), 송언석의원안 2025. 2. 20. 발의(의안번호 8311), 이만희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27), 박수현의원안 2025. 5. 12. 발의(의안번호 10481), 김상훈의원안 2025. 7. 9. 발의(의안번호 11359), 추경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7), 허성무의원안 2025. 8. 25. 발의(의안번호 1232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각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2030년 말까지 5년(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또는 2035년 말까지 10년(박수현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김상훈의원안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그 외에 협력중소기업 자

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 및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조의3제1항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4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내 용
2011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요건: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7% - 적용기한: 2013. 12. 31.
2014년	- 적용기한 연장: 2016. 12. 31.
2017년	- 공제율 상향: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연장: 2019. 12. 3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2020년	- 공제대상 신설: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시행연도	내 용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적용기한 연장: 2022. 12. 31.
2022년	- 공제대상 신설: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2023년	- 적용기한 연장: 2025. 12. 31.

동 제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주요사업은 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¹⁾,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²⁾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³⁾ 및 농어촌상생 협력기금사업⁴⁾, ③ 상생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⁵⁾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사업⁶⁾, ④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지원사업⁷⁾이 있음.

□ 현행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산무상임대 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를 무상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2016년 말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1)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내면 보증기관은 이를 기초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

2) 대기업이 협력재단에 협력중소기업과 지원사업을 지정하여 출연금을 내고, 협력재단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5)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6)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있고 2차례 적용기한 연장이 이루어져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 현행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동 세액공제는 1981년 말 세법개정으로 1982년부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써,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현행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 세액공제는 산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유형	내용	공제율
상생협력기금 출연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 -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

유형	내용	공제율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	3%
수탁기업 시설 투자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	1%(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연구시험용자산 무상 기증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자산 등의 자산을 대학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	10%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⁸⁾는 2024년 실적치 기준 약 294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됨.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0	0	0.8	0.5	0.5	0.2	0.7	0.7
법인세	179	202	212	329	408	294	279	285
합계	179	202	213	329	409	294	280	286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장부가액의 3% 공제,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7%) 공제, 시설 등을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10% 공제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임.

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 먼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협력중소기업 및 수탁기업의 자산 및 시설 확충을 도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향상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영업이익률 격차는 줄어들었으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2023년 들어 크게 감소하였음.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지표]

(단위: %p,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이익률 차이	1.5	1.3	2.0	2.6	3.6	3.7	1.4	1.3	3.5	1.7	0.5
임금격차	53.8	53.2	54.5	54.9	56.2	53.1	55.5	57.8	54.7	53.6	53.7
연구개발비 비중	18.2	17.6	18.5	19.0	17.4	18.0	18.7	19.4	19.8	19.3	17.2

주 1) 영업이익률 차이(%p) = 대기업 영업이익률-중소기업 영업이익률

2) 임금격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3) 연구개발비 비중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e-나라지표

[민간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연구개발비	625,634	688,344	715,067	735,998	808,076	894,213	942,968
대기업	398,038	438,236	446,658	451,694	491,394	551,706	606,503
(대기업증감률,%)	20.4	10.1	1.9	1.1	8.8	12.3	9.9
중견기업	90,687	95,954	101,864	103,691	114,751	125,041	130,899
(중견기업증감률,%)	13.0	5.8	6.2	1.8	10.7	9.0	4.7
중소기업	70,069	74,883	80,048	79,341	85,251	94,227	79,525
(중소기업증감률,%)	6.7	6.9	6.9	-0.9	7.4	10.5	-15.6
벤처기업	66,840	79,272	86,497	101,272	116,681	123,239	126,042
(벤처기업증감률,%)	6.1	18.6	9.1	17.1	15.2	5.6	2.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각 년도)

개정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미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출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동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생협력이 고용증대 효과, 산업 생태계 안정화 효과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적 수준의 상생협력 도출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필요하고, 본 조세특례의 세액공제를 인상 조치가 기업의 출연 여부, 출연금 규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음.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I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지

원이 협력기업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임금 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영여건의 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 지출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내국세 수입이 법인세 감면액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⁹⁾.

셋째, 연구시험용 시설의 무상기증을 유도하여 산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외에 ‘기부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¹⁰⁾)’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

9)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482억원인 반면, 조세제정연구원이 추정한 추가 내국세 징수액은 약 665억원임.

10)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법」 제100조의32¹¹⁾)’가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중복지원의 효과를 모두 합치면 출연금액의 104.5%의 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댄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세액감소 효과 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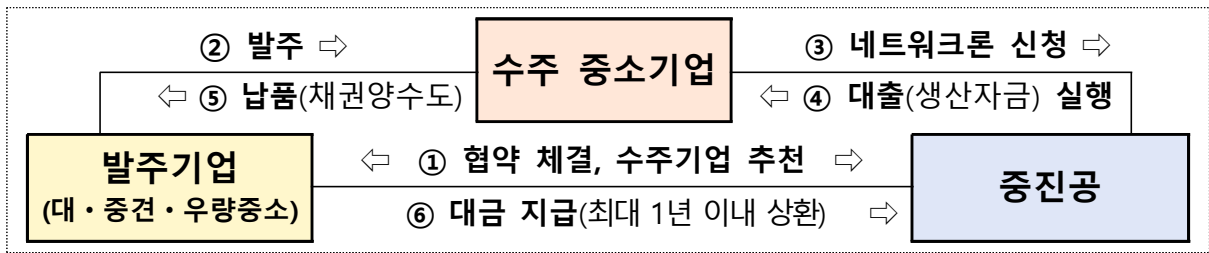
항목	적용내용	세액감소율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10%
기부금 손금산입 효과 (「법인세법」 제24조)	출연금액 전액 손금 산입 (기준 소득금액의 10% 한도)	최대 25%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효과 (「조특법」 제100조의32)	출연금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약 60% (300% * 20%)
합계		총 104.5% 95%(법인세)+ 9.5%(지방소득세)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둘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주기업인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발주기업인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협력하여 발주금액의 80%까지 365일 이내 단기자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관계형 정책금융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95억원 증가한 1,395억원에 달함.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2% 확대된 155.9억원임.

또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 비용은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1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위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나. 세액공제 대상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추가(송언석의원안)

□ 협력중소기업¹²⁾이란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적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기업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과 수탁기업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의미하는 상생협력의 취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기준 대기업 평균소득은 593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평균소득은 298만원에 불과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약 2배에 달함.

단기적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경제적 유인을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구인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업규모별 월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평균소득 격차(a-b)
2023년	593	298	295
2022년	591	286	305
2021년	563	266	297
2020년	529	259	270
2019년	515	245	270
최근 5년 평균	558.2	270.8	287.4

자료 : 연도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복지비용 격차를 고려할 때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만 1천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비용인 43만 4천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 7천원에 불과함.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전 규모	249.4	249.6	272.2
300인 미만 (A)	155.0	136.9	151.3
10~29인	130.1	119.4	127.0
30~99인	158.4	137.6	151.4
100~299인	179.7	158.7	183.5
300인 이상 (B)	363.7	400.9	434.2
300~499인	193.6	228.9	241.7
500~999인	219.2	206.3	242.9
1,000인 이상	442.5	489.3	526.1
A/B*100	42.6	34.1	34.8

주: 법정외 복지비용: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거, 건강보건, 식사, 자녀학비보조 등의 비용
 자료: 연도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8조의3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상생중소기업¹³⁾이

13)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전자금 대부,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각각 도입하여 대기업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 최대 50%(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100%(공동근로복지기금)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830개 근로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하여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 4천여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둘째, 근거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기금과 달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목적의 출연금은 협력기업에 대한 대가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김상훈의원안, 박수영의원안)

현 행	김상훈의원안	박수영의원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제1호) ○ 공제대상: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u>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u>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 공제율: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제8조의3제1항제1호) ○ 공제대상: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u>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u>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 공제율: 10%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 사후관리: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제상당액 추징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무역촉진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6 신설) ○ 공제대상: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 공제율: 10%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사후관리: 없음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김상훈의원안 2025. 7. 9. 발의(의안번호 11359), 박수영의원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42)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김상훈의원안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¹⁴⁾에 대한 보증 또는 대

14) 협력중소기업이란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적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인 반면, 박수영의원안은 별도의 공제요건 없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무역보험은 내국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을 의미함.

무역보험기금은 무역보험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4만 6천여 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음.¹⁵⁾

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5)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보증사업의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고, 보험사업의 경우 대기업도 수혜대상에 포함됨.

[무역보험 주요종목]

구 분	내 용	구조도
단기성	• (대상) 단기(2년 이하) 수출거래 - 주로 일반상품 거래시 지원 • (내용)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	
중장기성	• (대상) 중장기(2년 초과) 수출거래 관련 대출 - 해외 플랜트, 방산·선박 수주시 지원 • (내용) 수출대금 지급을 위해 수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미상환 시 보험금 지급	
신용보증	• (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출거래 - 수출기업의 수출이행자금 지원 • (내용) 수출기업이 수출이행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최근 5개년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단기성	53.8	59.7	68.2	74.9	86.1
중장기성	1.5	2.0	2.8	6.1	4.9
신용보증	3.4	4.0	4.5	4.4	4.5
기 타	1.0	0.8	1.3	1.3	1.5
전 체	59.6	66.6	76.8	86.7	97.0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당초 무역보험기금은 정부, 다른 기금 및 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민간기업의 출연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2025년 5

월 산업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에 민간기업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무역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민간기업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됨.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민간기업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현행 일반보증사업보다 상향된 보증비율 및 확대된 보증기간 적용 등 각종 우대조치가 포함된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보증사업의 규모가 민간출연금액의 20배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을 통한 무역보험기금 민간출연 유도는 수출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 확대 및 업계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사업 우대내용]

구 분	일반보증	수출공급망강화보증
① 대출금종류	무역금융	무역금융, 운전자금
② 지원한도	통상 수출실적 1/6 수준 (타 무역금융 한도 차감)	통상 수출실적 1/6 수준 (기 책정 선적전 보증한도 차감)
③ 보증비율	90%	100%
④ 보증요율	연간 평균 1%(신용도 차등)	단일 보증요율 적용(연간 0.65%)
⑤ 보증기간	1년 이내	3년
⑥ 공급규모	-	출연금액의 20배
⑦ 재무요건	부채비율 500%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70% 이자보상배수 2년연속 1 미만	부채비율 700%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80% 이자보상배수 2년연속 1 미만
⑧ 금융비용	대출이자, 보증료 수출기업 납부	우대금리 적용 보증료 지원(1년차 100%, 2~3년차 50%)
⑨ 기타	내규에 따른 심사절차, 전결권 준수 등	심사절차(심사의견, 방문조사 생략 등), 전결권 완화 등 신속지원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둘째, 김상훈의원안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영업이익률 격차는 줄어들었으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2023년 들어 크게 감소하였음.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지표]

(단위: %p,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이익률 차이	1.5	1.3	2.0	2.6	3.6	3.7	1.4	1.3	3.5	1.7	0.5
임금격차	53.8	53.2	54.5	54.9	56.2	53.1	55.5	57.8	54.7	53.6	53.7
연구개발비 비중	18.2	17.6	18.5	19.0	17.4	18.0	18.7	19.4	19.8	19.3	17.2

주 1) 영업이익률 차이(%p) = 대기업 영업이익률-중소기업 영업이익률

2) 임금격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3) 연구개발비 비중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e-나라 지표

[민간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연구개발비	625,634	688,344	715,067	735,998	808,076	894,213	942,968
대기업	398,038	438,236	446,658	451,694	491,394	551,706	606,503
(대기업증감률,%)	20.4	10.1	1.9	1.1	8.8	12.3	9.9
중견기업	90,687	95,954	101,864	103,691	114,751	125,041	130,899
(중견기업증감률,%)	13.0	5.8	6.2	1.8	10.7	9.0	4.7
중소기업	70,069	74,883	80,048	79,341	85,251	94,227	79,525
(중소기업증감률,%)	6.7	6.9	6.9	-0.9	7.4	10.5	-15.6
벤처기업	66,840	79,272	86,497	101,272	116,681	123,239	126,042
(벤처기업증감률,%)	6.1	18.6	9.1	17.1	15.2	5.6	2.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셋째, 미 트럼프 정부 재출범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할 경우 해당 출연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는 점과 출연금 납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대부분 해당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기업이 관련 업계 및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을 납입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2025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르면,¹⁶⁾

16)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1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번호	기부금
4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4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은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손금으로 계상되므로 이에 더하여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POSCO 등 각 산업별 수출을 선도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¹⁷⁾, 대기업을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은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간접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김상훈의원안과 관련하여 현재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현행법 제8조의3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경우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 감소가 가능할 수 있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하여 ‘대·

4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사업자 외의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51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 8. 18.)에 따르면 2025년 8월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은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함.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외에 ‘기부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가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중복지원의 효과를 모두 합치면 출연금액의 104.5%의 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세액감소 효과 산정]

(단위: %)

항목	적용내용	세액감소율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법」 제8조의3)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10%
기부금 손금산입 효과 (「법인세법」 제24조)	출연금액 전액 손금 산입 (기준 소득금액의 10% 한도)	최대 25%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효과 (「조세특법」 제100조의32)	출연금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약 60% (300% * 20%)
합계		총 104.5% 95%(법인세)+ 9.5%(지방소득세)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셋째, 박수영의원안은 별도의 공제요건 없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기금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무역보험기금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손금으로 계상되는 다른 공익목적 기부금의 경우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각 개정안은 공제요건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상훈의원안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기금으로 하여금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박수영의원안은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후추징 요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획재정부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향후 민간 출연금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고, 무역보험기금의 지원대상은 수출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일반 중소기업 중 보증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박수영의원안의 경우 출연금 중 대기업 지원을 위해 쓰이는

부분까지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게 되므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증 및 대출 지원을 위해서만 활용될 예정이고, 출연사업의 예상 수혜기업이 대부분 중견기업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증 및 대출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대차 출연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기업 비중 예측치】

(단위 : 억원, %)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업	
	금액	비중	기업수	비중
중소기업	101	5%	11	22%
중견기업	1,899	95%	39	78%
합 계	2,000	100%	50	100%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문 의 처

02)6788-5154